

(사업방법서 별지)

## 1. 보험종목의 명칭 등

가. 보험종목의 명칭: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

나. 연금지급형태

| 연금지급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종신연금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증기간부<br>(개인계약) | 정액형(10 ~ 40년, 100세보증) |
|   |                 | 체증형(10 ~ 20년보증)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| 소득보장형(10 ~ 20년보증)     |
|   | 보증금액부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확정연금형(5년, 10년, 15년, 20년, 30년, 50년, 60년)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피보험자 가입나이,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

가. 보험기간

| 보험기간  |   |
|-------|---|
| 종신연금형 |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 |
| 확정연금형 |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기간<br>(5년, 10년, 15년, 20년, 30년, 50년, 60년)까지 |

나. 보험료 납입기간, 피보험자 가입나이,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

| 보험료 납입기간 | 피보험자 가입나이 | 연금개시나이    | 보험료 납입주기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일시납      | 45세 ~ 80세 | 45세 ~ 80세 | 일시납      |

※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로 선택한 경우, 최대 연금개시나이는 “100세-보증지급기간+1” 세 임

### 3.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 4. 배당에 관한 사항

배당금이 없음

### 5. 보험료에 관한 사항

가.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 계약의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다.(이하 ‘전환일시금’ 이라 한다)

나. 전환일시금의 최저 한도는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.

### 6.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 7.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 8. 해지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9.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0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1.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

가.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.

나.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,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.

다.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.

$$\text{공시기준이율} = \text{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} \times \alpha + \text{운용자산이익률} \times (1 - \alpha)$$

### (1)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

(가)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
$$\begin{aligned} & \text{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} \\ &= \text{국고채(5년) 수익률} \times \text{국고채 가중치}(\beta 1) \\ &+ \text{회사채(무보증 3년, AA-) 수익률} \times \text{회사채 가중치}(\beta 2) \\ &+ \text{통화안정증권(1년) 수익률} \times \text{통화안정증권 가중치}(\beta 3) \\ &+ \text{양도성예금증서(91일) 유통수익률} \times \text{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}(\beta 4) \end{aligned}$$

(나)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

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 할 수 있다.

(다) 국고채(5년), 회사채(무보증 3년, AA-) 및 통화안정증권(1년)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(91일)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.

(라) 국고채 가중치(B1), 회사채 가중치(B2), 통화안정증권 가중치(B3),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(B4)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.

$$\text{국고채 가중치}(\beta 1) = \frac{a}{a+b+c+d}$$

$$\text{회사채 가중치}(\beta 2) = \frac{b}{a+b+c+d}$$

$$\text{통화안정증권 가중치}(\beta 3) = \frac{c}{a+b+c+d}$$

$$\text{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}(\beta 4) = \frac{d}{a+b+c+d}$$

-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(월평잔의 평균)

-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(월평잔의 평균)

-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(월평잔의 평균)

-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(월평잔의 평균)

-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.

- 가중치는 0.5%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%이상 100%이하로 결정한다.

## (2) 운용자산이익률

(가)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
$$\text{운용자산이익률} = \text{운용자산수익률} - \text{투자지출률}$$

(나)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,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.

|  |
|--|
| <p>운용자산수익률(%)</p> $= \frac{2 \times I}{\sum_{t=1}^{12} [\text{직전}(t+1)\text{개월말운용자산} + \text{직전}(t)\text{개월말운용자산}] / 12 - (I - E)} \times 100$ <p>투자지출률(%)</p> $= \frac{2 \times E}{\sum_{t=1}^{12} [\text{직전}(t+1)\text{개월말운용자산} + \text{직전}(t)\text{개월말운용자산}] / 12 - (I - E)} \times 100$ <p>- I :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<br/>- E :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</p> |
|--|

- (다)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.
- (라)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 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.

(3)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

- (가)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
|  |
|--|
| <p>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(α) = <math>\frac{A/B+C}{A+C}</math></p> <p>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(1-α) = <math>1 - \frac{A/B+C}{A+C}</math></p> <p>- A :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<br/>- B :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<br/>- C : 직전년도 수입보험료</p> |
|--|

- (나)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.
- (다) 가중치는 0.5%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.
- (라)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, 60%를 초과할 수 없다.
- (마) 「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」, 「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」과 「수입보험료」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.

(바) 「수입보험료」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.

라. ‘가’ 항의 공시이율은 동종계정에 있는 동종상품[‘가’ 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]의 해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.

마.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경과기간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.5%,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.5%를 최저한도로 한다.

바.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, 인터넷홈페이지(상품공시실)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.

사.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「공시이율 운용지침」에 따른다.

## 12.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3. 기타

### 가. 전환전 계약의 준용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른다. 다만, 『보험계약대출』 및 『특약내용의 변경』 등에 관한 사항은 취급하지 않는다.

나. 가입나이, 보험기간, 납입기간, 납입주기, 가입한도 등의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.